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11
----------	------

발의연월일 : 2016. 11. 23.

발의자 : 원혜영 · 권석창 · 김경협

김민기 · 김상희 · 김성원

문희상 · 박찬우 · 배덕광

서영교 · 설훈 · 안호영

여상규 · 윤상현 · 이용주

이은권 · 이종구 · 이채익

이현재 · 전혜숙 · 조배숙

조승래 의원(22인)

제안이유

오늘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 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율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제도가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한층 더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개별 독립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사 제도와의 차이점도 존재).

따라서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지도사에 대한 징계·벌칙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하는 등의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직무 및 사업에의 우선참여(안 제2조)

경영·기술지도사는 경영·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등과 이와 관련된 상담, 자문 및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을 대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기관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다.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등(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중소기업청장이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 자격을 가지며, 일정 수준의 학위나 자격 취득 후 일정 경력을 쌓거나, 제32조에 따른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안 제8조)

지도사의 자격취득,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지도사의 등록(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개업지도사로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5년마다 지도실적을 갖추거나 보수교육을 받아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도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무소 개설과 폐업(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개업지도사는 사무소나 2인 이상의 개업지도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의 지도·감독 하에 직무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폐업 시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사. 지도법인의 설립 등(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1) 개업지도사는 직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지도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사원 등과 자본금의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도법인의 사원은 개업지도사이어야 하고, 사원 중 3명 이상을 이사로 두어야 하며,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개업지도사를 두도록 함.

3)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을 6개월 내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하

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지도법인의 의무 및 업무수행(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 1) 지도법인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증보험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함.
- 2) 지도법인은 그 명칭에 지도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이를 표시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3) 지도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주사무소에는 2명 이상의 이사,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도록 함.
- 4) 지도법인은 업무담당 지도사를 지정하여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담당 지도사는 이사이거나 이사를 포함하도록 함.
- 5) 지도법인의 지도사에게 일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함.

자. 지도법인의 해산 등(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 1) 지도법인은 정관상 사유 발생, 사원총회 결의,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해산하고, 일정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만큼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예치하도록 함.
- 2) 지도사의 등록갱신, 지도사의 의무 및 업무제한 규정 등은 지도법인에도 준용하도록 함.
- 3) 중소기업청장은 일정한 경우 지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나 지도사 실무수습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카.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등(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1) 지도사의 명의 대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을 금지하고,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진실의무 등을 규정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

2)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함.

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1)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 형태의 지도사회를 설립하고, 지도사와 지도법인은 의무가입하도록 하며,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청장의 위탁을 받아 실무수습교육, 보수교육 및 양성과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회를 지도·감독하며,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파. 징계 및 벌칙(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 1)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지도사를 징계할 수 있고, 이러한 징계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함.
- 2) 명의 대여 등을 하거나 받은 자, 비밀누설, 거짓보고, 상근이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등록 없이 지도사나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3) 형벌규정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직무) ① 경영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의 대행을 포함한다)

② 기술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경영지도사의 직무 또는 제2항의 기술지도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등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지도사 자격시험) ①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 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3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제8조(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이하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도사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나.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 다. 시험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
2. 지도사에 대한 징계처분

②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도사의 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제9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후 중소기업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이하 “개업지도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개업지도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만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지도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0조(등록거부)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지도사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의 통보 등)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소의 설치) 개업지도사는 그 직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합동사무소) ① 개업지도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지도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폐업) 개업지도사가 폐업을 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보조원) ① 개업지도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개업지도사는 그가 고용한 직무보조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4장 경영기술지도법인

제18조(경영기술지도법인) ① 개업지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

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填)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19조(지도법인의 등록) ① 지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법인은 제20조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원 등) ① 지도법인의 사원은 개업지도사이어야 한다.

②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3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지도법인의 이 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 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4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지도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개업지도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개업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지도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지도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제11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21조(자본금 등) ①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지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 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증보험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제2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24조(명칭) ① 지도법인은 그 명칭 중에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사무소 등)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26조(업무집행방법 등) ① 지도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지도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지도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경업 금지) ①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지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법인의 이사이었던거나 소속지도사이었던 사람은 그 지도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지도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지도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해산) ①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지도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

는 금액을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정관 변경의 신고) 지도법인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① 지도법인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지도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

제32조(지도사의 양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정교육기관)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실무수습교

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무수습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6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등

제34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개업지도사나 그 직무보조원 또는 개업지도사나 그 직무보조원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도사의 성실의무)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개업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정관 등 준수) 지도사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정관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지도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9조(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제7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제40조(목적 및 설립) ①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 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도사, 지도법인은 지도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지도사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 ⑤ 지도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⑥ 지도사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정관) ① 지도社会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지도사의 품위유지와 직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도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지도·감독 등) ①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3조(업무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도사의 실무수습교육, 보수교육 및 양성과정
2. 중소기업청장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제8장 징계

제44조(징계) ① 중소기업청장은 개업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지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③ 중소기업청장이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지도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도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지도사에게 징계절차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지도사는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15조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직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9장 별칙

제45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
2. 제35조(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36조제2항(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

를 설치한 자

2. 제27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 자
3.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직무보조원을 채용한 자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조에 따른 지도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0조에 따라 설립되는 지도사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에 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경우 제40조에 따른 지도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지도사회가 승계한다.

제4조(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정하는 자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를 “정하는 자”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86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를 삭제한다.